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45
----------	-------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배준영·김승수·김은혜
김기웅·서명옥·박정하
이종배·김희정·최보운
이성권·안철수·윤한홍
김 건·이상휘·엄태영
박대출·김성원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375원으로 정하고 2026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리터당 492원, 337.5원으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법률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2條(課稅對象과 稅率) ① · ② (생략)	第2條(課稅對象과 稅率)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u>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u>)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